

DDA 2008년 7월 농업협상*

신 유 선

자유화 세부원칙들 (Modalities)에 관한 잠정 합의안 마련 등 중대한 진전을 이뤄냈는데도 불구하고, 7월 29일 DDA 무역협상이 끝내 결렬되었다.

'개발 라운드'를 기치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됐던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¹⁾의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²⁾ 무역협상이 7월 29일 끝내 결렬되었다. 30여개 주요국 각료들은 지난 25일 농업과 비농산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³⁾ 분야의 자유화 세부원칙들(Modalities)⁴⁾에 관한 잠정 합의안 마련 등 중대한 진전을 이뤄냈는데도 불구하고,

* 본 내용은 국내외 DDA 관련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유선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shinys@krei.re.kr 02-3299-4287)

- 1) 1948년 이후 GATT가 추구해온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출범한 경제분야의 UN과 같은 기구이다.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이다.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과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결정방식은 컨센서방식을 채용하여 특정 안건 표결시 회의 참가국의 명백한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투표국의 표결로 결정한다.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특별이사회, 상설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회의 참석은 모든 WTO 회원국에 개방되어 있다.
- 2)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Doha)'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아홉 번째 다자간무역협상을 말한다. 이전의 '라운드'라는 명칭대신에 개도국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협상은 WTO 15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각료회의에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었다.
- 3) DDA 협상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이외의 물품 즉, 공산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한다. 농업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농산물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비농산물협상'이라고 한다.

농업 분야의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⁵⁾ 발동요건 완화를 비롯한 남은 쟁점을 놓고 미국과 인도, 중국의 대치로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153개 전 회원국 대표가 참가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TNC)⁶⁾ 회의를 소집해 선진 7개국(G7)⁷⁾ 회의와 주요국 통상각료회의(Green Room 회의)⁸⁾에서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상이 결렬된 주요 원인은 개도국의 긴급수입관세(SSM) 발동요건 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선진국들과 신흥개도국들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1. DDA 각료회의 잠정 합의안

2007년 7월 세부원칙 초안에 이어 2008년 2월 1차 수정안이 배포되었고, 5월에 2차 수정안, 7월 각료회의 1주일 전 3차 수정안이 제시된 바 있다. DDA 각료회의는 결렬되었으나 7월 25일 30여개 주요국 각료들이 농업분야에서 세부원칙들(Modalities)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 등 중대한 진전을 보였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3차 수정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중요 부분에서 핵심 수치가 제시되었다.

DDA 각료회의는 결렬되었으나 7월 25일 30여개 주요국 각료들이 농업분야에서 세부원칙들(Modalities)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 등 중대한 진전을 보였다.

시장접근분야

관세 감축률 (Reduction Rate)⁹⁾

2008년 2월 1차 수정안 때부터 양허관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관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구간별 차등 감축방식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 4) 세부원칙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폭, 감축기간 등 구체적 수치를 담은 문서인데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Schedule)를 WTO에 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된다.
- 5)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SSM을 만들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의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SSG)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6) UR협상의 전반적 활동을 감독했던 각료급 최고의결기간을 말한다. UR협상시 무역교섭위원회 산하에 크게 상품협상그룹(GNC)과 서비스협상그룹(GNS)로 구분되어 있다. 상품협상그룹은 다시 시장개방분야, GATT규율분야, 신상품분야 등으로 나뉘어 14개 세부협상 그룹이 있으며, 서비스협상 그룹은 상품협상그룹과 별도로 서비스교역에 관한 국제규범정립을 담당하고 있다. 각 그룹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TNC회의에 상정되고 TNC회의에서는 각 협상그룹에서 올라온 결과를 놓고 그룹간의 조정을 통해 최종 의사를 결정한다.
- 7)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그룹이며, 여기에 러시아를 포함하여 G 8이라고 하며, 신흥 개도국 15개국을 포함하여 G 22이라고 한다.
- 8) WTO 사무총장이 초청한 20여 개국의 협상수석대표들이 모여 중요 안건을 다루는 회의로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주로 개최된다. 회의가 개최되는 WTO 회의실의 벽지색깔이 녹색이어서 'Green Room'회의로 이름 붙이게 되었다.
- 9) 관세를 감축하는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200%p에 관세감축율 50%를 적용하면 감축 후 관세는 100%p가 된다. 극단적인 경우로 관세감축율이 100%이면 모든 관세는 감축 후에 0%가 된다.

선진국 최상위구간 관세감축률이 70%로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개도국 감축율은 46.7%가 되었다.

최상위 구간의 관세 감축률이 가장 큰 쟁점이었기 때문에 각료회의 전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다가 각료회의에서 선진국 최상위구간 감축률이 70%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개도국 감축율은 선진국의 2/3수준인 46.7%가 된다.

표 1 DDA 잠정 합의안: 관세 감축률

구분	선진국		개도국(선진국의 2/3)	
	구간경계	감축률	구간경계	감축률
1구간	0~20%	50%	0~30%	33.3%
2구간	21~50%	57%	31~80%	38.0%
3구간	51~75%	64%	81~130%	42.7%
4구간	75% 초과	70%	130% 초과	46.7%

관세상한 (Tariff capping)¹⁰⁾

그동안 미국, EU 및 호주를 비롯한 수출국그룹인 케언즈그룹(Cairns Group)¹¹⁾ 등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 등 수출개도국그룹(G20)¹²⁾ 등 대부분 국가들은 관세상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수입국그룹(G10)¹³⁾은 이미 관세감축원칙에 대한 논의에서 고관세 품목은 높은 감축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므로 관세상한은 이중적 부담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다.

7월 10일 의장 3차 수정안에서는 관세상한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100%(개도국 150%) 이상 고관세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상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민감품목 및 비민감품목 중 전체 세번의 1%는 100% 이상 관세유지가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관세상한이 면제된다.

이에 대한 일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수출국들이 관세상한을 강하게 주장해 온 상황에서 일률적인 관세상한이 도입되지 않고 일부(1%) 관세상한 면제가 주어진 점은 수입국 입장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개도국의 특별품목(Special Product, SP)¹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없는 상황으로 추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잠정 합의안에서 선진국의 경우 민감품목 및 비민감품목 중 전체 세번의 1%는 100% 이상 관세유지가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관세상한이 면제된다.

10) 관세 상한은 일정한 수준을 넘는 관세는 무조건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자는 개념이다.
 11) 호주 케언즈에서 결성된 수출국 그룹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우루과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과 케언즈그룹, G20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DDA협상에서 보다 실질적인 농산물 교역 자유화를 위해 수입국들의 대폭적인 시장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G20은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 개도국 그룹을 말한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 EU 등 선진국을 견제하는 개도국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13) G10은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순수입국 모임으로 농산물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감축하는데 반대하는 그룹이다.
 14)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를 감안하여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품목 개수와 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선진국, 농산물 수출개도국들과 이를 가능한 확대하려는 농산물 수입 개도국 간 입장차가 크다.

민감품목 (Sensitive products)¹⁵⁾

일반품목에서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품목의 감축률보다 낮은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보상으로 수입쿼터(Tariff Rate Quota, TRQ)¹⁶⁾를 증량해야 한다. 민감품목 개수 및 TRQ 증량수준은 그 동안 쟁점이 되어 왔으며, 의장 3차 수정안에서는 이에 대해 수치가 범위로 제시되었다.

잠정 합의안에서 민감품목 개수는 선진국의 경우 전체 세번의 4%(개도국은 5.3%), TRQ 증량수준은 국내 소비량의 4%로 제시(개도국은 2.7%)되었다. 민감품목 개수는 3차 수정안 제시범위(4~6%) 중 낮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TRQ 증량수준도 3차 수정안 범위(4~6%) 중 낮은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절충안을 모색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농산물 세번 수(1,452개)를 기준으로 하면 민감품목은 약 58개이다.

잠정 합의안에서 민감품목 개수는 선진국의 경우 전체 세번의 4%(개도국은 5.3%), TRQ 증량수준은 국내 소비량의 4%(개도국은 2.7%)로 제시되었다.

표 2 DDA 잠정 합의안: 민감품목

조 건	3차 수정안	잠정 합의안
Deviation 1/3 적용시(구간별 감축률의 2/3수준 적용)	[3] [5]	(3)
Deviation 1/2 적용시(구간별 감축률의 1/2수준 적용)	[3.5] [5.5]	(3.5)
Deviation 2/3 적용시(구간별 감축률의 1/3수준 적용)	[4] [6]	4

주 : Deviation(이탈수준)은 일반품목에 비해 관세감축을 덜 하는 정도를 말함.

특별품목 (Special Products, SP)

개도국은 일부품목을 특별품목(SP)으로 지정하여 관세감축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의장 3차 수정안에서는 특별품목 개수 및 감축률 등 대부분 사항에 이견차가 있어 개수 및 감축률 등은 범위로 제시되었다. 특히 특별품목(SP)에 대한 관세감축면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선진국과 수출국들은 감축면제를 강하게 반대해 왔으며, 개도국 특별품목그룹(G33)¹⁷⁾은 감축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왔다.

잠정 합의안에서 특별품목의 개수는 12%이고, 평균감축율은 11%이며, 감축면제 범위는 5%로 제시되었다. 특별품목 개수는 3차 수정안 범위의 중간수준에 비해 낮

잠정 합의안에서 특별품목의 개수는 12%이고, 평균감축율은 11%이며, 감축면제범위는 5%로 제시되었다.

15)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터(TRQ)를 주어야 한다. 민감 품목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번(tariff lines)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 품목의 대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16) 수입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콩에 대해 100톤까지는 5%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100톤이 넘는 물량은 120%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5%의 관세를 쿼터밖관세(out-quota tariff)라고 한다. 만약, 한 해 동안 콩의 수입이 70톤만 되었을 경우 수입쿼터 소진율(fill rate)은 70%가 되고 30톤이 미소진(underfill)되었다고 말한다.

17) G33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SP를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으로 개도국 특별품목 개수를 충분히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다.

은 수준이나, 그동안 선진국과 수출국들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던 감축면제범위가 5%로 비교적 높게 제시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 특별품목은 약 174개(세번 기준)가 된다.

표 3 DDA 잠정 합의안: 특별품목

구 분	3차 수정안	잠정 합의안
SP 개수(세번)	10~18%	12%
평균감축율	10~14%	11%
감축면제 범위(세번)	0~6%	5%

특별긴급관세 (Special Safeguard, SSG)¹⁸⁾

3차 수정안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철폐 또는 1.5%로 감축하는 안(개도국은 3%로 감축)이 제시되었다. 잠정 합의안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특별긴급관세(SSG) 발동가능 품목수를 이행 첫해 전체 세번의 1%부터 시작해서 7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완전히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 단, SSG 발동시 추가관세를 부과한 결과가 UR 양허관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발동요건의 일부를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SSG 발동가능품목이 120개(전체 세번의 8.3%)이나, 실제 발동 품목은 27개(1.9%, 1995~06년)이다.

잠정 합의안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SSG 발동가능 품목수를 이행 첫해 전체 세번의 1%부터 시작해서 7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완전히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

표 4 DDA 잠정 합의안: SSG 발동가능 품목 수

이행시작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전체 세번의 1%	전체 세번의 0.86%	전체 세번의 0.71%	전체 세번의 0.57%	전체 세번의 0.43%	전체 세번의 0.28%	전체 세번의 0.14%	철폐 (0%)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¹⁹⁾

개도국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도록 인정받았다.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의 발동요건 등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대립이 큰 상황으로, 특히 추가관세 부과시 UR²⁰⁾ 양허관세수준을 초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18)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에만 적용하는 SSG 제도가 탄생하였다.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국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를 '구제조치(Remedy)'라고 하기도 한다. SSG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국별로 특별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이행계획서(Schedule)에 표시해 두었다.

19)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SSM을 만들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의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SSG)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잠정 합의안에서는 연간 세번 수의 2.5%에 한하여 추가관세를 UR 양허관세 이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개도국 특별품목그룹(G33)과 수출국 주장의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수입량이 최근 3개년 수입량의 40% 이상 증가시 허용되며, 추가관세 부과시 UR양허관세 초과한도는 당해년도 양허관세의 15% 또는 15% 중 높은 수치로 설정해야 한다.

잠정 합의안에서는 연간 세번수의 2.5%에 한하여 추가관세를 UR 양허관세 이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개도국과 수출국 주장의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표 5 DDA 잠정 합의안: SSM 발동기준 및 추가관세

구분	발동기준	추가관세 (실행관세에 부과)
물량기준 SSM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10%초과 115%이하	양허관세의 25% 또는 25%p 중 높은 것
	115%초과 135%이하	양허관세의 40% 또는 40%p 중 높은 것
	135%초과	양허관세의 50% 또는 50%p 중 높은 것
가격기준 SSM	최근 3개년 평균가격의 85% 이하로 하락시	발동가격과 수입가격 차이의 85%

국내보조 분야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 Distorting Domestic Support, OTDS)²¹⁾

그동안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감축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상황으로, 이번 잠정 합의안에서는 EU와 미국의 OTDS 감축률만 제시되었다. EU의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감축수준은 80%(3차 수정안: 75~85%), 미국의 감축수준은 70%(3차 수정안: 66~73%)로 3차 수정안의 중간수준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OTDS 한도액이 482.2억 달러에서 144.7억 달러 수준으로 감축되어야 한다. 한편, 기타 선진국 및 개도국의 OTDS 감축수준은 아직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으로 추후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잠정 합의안에서 EU의 OTDS 감축수준은 80%, 미국의 감축수준은 70%로 3차 수정안의 중간수준이 제시되었다.

20) 1986년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시작되어 1994년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종결된 여덟 번째 다자간무역협상을 말한다. 과거 7차례의 다자간무역협상이 대체로 공산품 교역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UR협상은 농업,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 무역의 대부분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1)

①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⑤ 허용보조 (Green Box: GB)
② 감축대상보조 (AMS)	③ 최소허용 보조 (De-minimis: DM)	④ 블루박스 (Blue Box: BB)	

- ①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AMS, De-minimis, Blue Box를 합한 총액을 말한다.
- ② 감축대상보조(AMS) : 무역왜곡효과가 있어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하는 보조이다.
- ③ 최소허용보조(DM) : AMS 성격이나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이다.
- ④ 블루박스(BB) : AMS와 허용보조의 중간 성격의 과도기적 보조로서 일부제약요건을 두어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한 보조이다.
- ⑤ 허용보조(GB) :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이다.

표 6 우리나라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이행기간별 보조 수준

단위: 억 원

구 분	기준 보조액	감축율	감축액 및 보조액									
			이행 첫날	이행 1년	이행 2년	이행 3년	이행 4년	이행 5년	이행 6년	이행 7년	이행 8년	
95-00년	91,855	33.3%	감축액	12,253	18,380	24,507	30,634	36,760	42,887	49,014	55,141	61,267
			보조액	79,602	73,475	67,348	61,221	55,095	48,968	42,841	36,714	30,588
		40%	감축액	11,023	16,534	22,045	27,557	33,068	38,579	44,090	49,602	55,113
			보조액	80,832	75,321	69,810	64,299	58,787	53,276	47,765	42,253	36,742
95-04년	95,368	33.3%	감축액	12,722	19,083	25,444	31,805	38,166	44,527	50,888	57,249	63,610
			보조액	79,133	72,772	66,411	60,050	53,689	47,328	40,967	34,606	28,245
		40%	감축액	11,444	17,166	22,888	28,610	34,332	40,055	45,777	51,499	57,221
			보조액	80,411	74,689	68,967	63,245	57,523	51,800	46,078	40,356	34,634

감축대상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²²⁾

AMS 수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감축율을 적용하며, 3차 수정안에서는 단일수치를 제시하여 대체로 동 수치를 중심으로 의견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AMS 총액뿐만 아니라 품목별 한도를 설정하여 품목별로 지원 가능한 보조금의 규모를 제한하게 된다.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1995~2000년 평균 지급액을 한도로 하며, 미국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표 7 DDA 의장 3차 수정안: AMS

구간	AMS규모 (억달러)	AMS 감축율	이행기간	개도국
1구간(EU)	400 초과	70%	첫날 총 AMS의 2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30%(선진국의 2/3) -첫날 총 AMS의 3.3% 감축, 나머지는 8년동안 균등 감축
2구간(미국, 일본)	400~150	60%		
3구간(기타 국가)	150 미만	45%		

3차 수정안에서 개도국은 3가지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품목별 AMS 한도를 양허할 수 있다. 즉, ① 1995~2000년 혹은 1995~2004년 평균 통보된 AMS지급액, ② 1995~2000년 혹은 1995~2004년 평균 생산액의 20%, ③ 해당연도 총 AMS의 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품목별 AMS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

3차 수정안에서 개도국은 3가지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품목별 AMS 한도를 양허할 수 있다.

²²⁾ 농업보조총액이라고도 한다. UR 협상 결과 각국이 추곡수매제 등에 사용하는 보조금 한도를 정해서 이행계획서에 표시했고, 이것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선진국은 6년간 20%를 감축하고 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DDA 협상에서는 이렇게 감축하고 남은 한도에서부터 감축하기로 하였다.

<표 8>은 위의 3가지 옵션에 따라 우리나라 품목특정 AMS 지급 한도를 계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쌀의 경우, 2안의 1995~2004년 평균 생산액의 20%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하지만 쌀을 제외한 품목들은 3안(해당연도 총 AMS의 20%)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한 가지 옵션을 선택하면 모든 품목에 이 옵션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안을 선택할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품목특정 AMS 한도는 이행 첫날부터 적용해야 한다. 다만, 최근 2년 동안 통보된 평균 품목특정 AMS 지급실적이 한도보다 높을 경우에는 2년 평균 지급실적 혹은 한도의 130% 중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3년 동안 균등 감축한다.

표 8 품목특정 AMS 지급 한도 기준

단위: 억 원

기준	세부사항	쌀	보리	옥수수	유채	콩	합계	총 AMS한도	
선진국 ¹⁾	95-00 AMS 평균지급액	17,451	476	39	9	236 ²⁾	18,211	8,195	
개도국	1안	95-00 AMS 평균지급액	17,451	476	39	9	-	17,976	10,430
		95-04 AMS 평균지급액	16,354	464	24	9	47	16,897	
	2안	95-00 평균생산액의 20%	17,310	243	71	3	551	18,177	
		95-04 평균생산액의 20%	18,201	275	75	3	582	19,135	
	3안 ³⁾	해당연도 총 AMS의 20%	2,086	2,086	2,086	2,086	2,086	10,430	

주: 1)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품목특정 AMS한도는 '95-'00년 동안 통보된 품목특정 AMS 평균지급액이나 기준기간 이후 새롭게 도입된 경우는 세부원칙 채택전 통보된 최근 2년 동안의 AMS 평균지급액을 한도로 하고 있음.

2) 콩의 경우는 2004년 처음으로 AMS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세부원칙 채택전 통보된 최근 2년 동안의 AMS 평균지급액을 한도로 하였음.

3) 개도국 3안은 DDA이행기간 해당연도 총 AMS 양허한도의 20%임(이행말 기준).

4) 쌀, 보리, 옥수수, 유채, 콩 이외의 기타 품목은 de minimis 한도까지 지급이 가능함.

최소허용보조(De minimis)²³⁾

선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품목특정 de minimis의 경우 해당 품목 생산액의 5% + 품목불특정 de minimis의 경우 농업총생산액의 5%)을 50% 감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진 상황이다(3차 수정안). 최소허용보조의 감축 이행은 이행 첫날부터 적용된다. 개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품목특정 de minimis는 해당 품목 생산액의 10% + 품목불특정 de minimis는 농업총생산액의 10%)을 33.3% 감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개도국 감축이행은 선진국보다 3년이 더 길다.

<표 9>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최소허용보조 지급실적을 감안할 때 이행 첫날의 감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현재 최소허용보조 지급 실적을 감안할 때 이행 첫날의 감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²³⁾ 최소허용보조는 감축대상보조(AMS)와 성격이 같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UR 협상 결과 감축의 무가 면제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총생산액의 5%, 개도국의 경우 10% 한도 이내이면 최소허용보조로 분류되어 감축의무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DDA 협상에서는 최소허용보조도 AMS와 마찬가지로 감축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정해진 감축율만큼 감축을 해야 한다.

표 9 품목특정 De-minimis 지급 실적과 한도

단위: %

품목	지급 실적		지급한도 ¹⁾			
	UR 평균 (95~04)	최근 평균 (03~04)	선진국		개도국	
			이행초	이행말	이행초	이행말
옥수수 ²⁾	5.9	3.9	5.0	2.0	10.0	6.0
콩 ³⁾	3.6	8.6	5.0	2.0	10.0	6.0
맥주보리	0.6	0.5	5.0	2.0	10.0	6.0
감자	0.1	-	5.0	2.0	10.0	6.0
고구마	0.0	0.0	5.0	2.0	10.0	6.0
소	3.0	1.5	5.0	2.0	10.0	6.0
돼지	0.3	0.0	5.0	2.0	10.0	6.0
닭	0.0	-	5.0	2.0	10.0	6.0
우유	4.9	3.2	5.0	2.0	10.0	6.0
계란	0.1	-	5.0	2.0	10.0	6.0
고추	0.3	0.6	5.0	2.0	10.0	6.0
마늘	1.6	1.9	5.0	2.0	10.0	6.0
양파	1.4	2.2	5.0	2.0	10.0	6.0
과	0.2	0.3	5.0	2.0	10.0	6.0
당근	0.8	2.4	5.0	2.0	10.0	6.0
생강	0.2	-	5.0	2.0	10.0	6.0
채소류 ⁴⁾	0.2	0.3	5.0	2.0	10.0	6.0
버섯류	0.3	0.1	5.0	2.0	10.0	6.0
인삼	1.5	0.2	5.0	2.0	10.0	6.0
화훼류	0.2	0.1	5.0	2.0	10.0	6.0
사과	0.7	1.3	5.0	2.0	10.0	6.0
배	0.8	2.0	5.0	2.0	10.0	6.0
단감	0.2	0.5	5.0	2.0	10.0	6.0
참다래	1.1	-	5.0	2.0	10.0	6.0
감귤	0.3	0.9	5.0	2.0	10.0	6.0
복숭아 ⁵⁾	0.1	-	5.0	2.0	10.0	6.0
포도	0.0	-	5.0	2.0	10.0	6.0
유자	3.1	-	5.0	2.0	10.0	6.0
밤	1.3	0.4	5.0	2.0	10.0	6.0
대추	0.0	0.0	5.0	2.0	10.0	6.0

주: 1) 지급한도는 선진국의 경우 해당품목 생산액의 5%이고, 개도국은 10%임.

2) 1995~98년 옥수수의 지급실적은 개도국 지원한도인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품목특정 AMS로 전환하였음.

3) 2004년 콩의 지급실적은 11.0%로 개도국 지원한도인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품목특정 AMS로 전환하였음.

4) 봄무, 배추, 고랭지무 등이 포함됨.

5) 2000, 2001년 복숭아는 복숭아 외에 포도, 자두를 포함하는 금액임.

블루박스(Blue box)²⁴⁾

²⁴⁾ 단순히 보면 본질적으로 감축대상보조(AMS)와 같은 보조금이다. 그러나 UR 협상과정에서 주요국간 타협의 산물로 탄생했는데, 생산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신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금이다. 이것이 현재의 블루박스(Old BB)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블루박스로 지급된 보조금이 없다. DDA 협상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존 블루박스와는 달리 생산제한을 하지 않고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이다. 이를 새로운 블루박스(New BB)라고 한다. 물론 마음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경지면적 등을 고정하는 등의 제약이 따른다.

생산제한을 전제로 하는 현행 블루박스(Old BB) 외에 생산제한을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New BB)를 도입하면서, 블루박스 보조 총액과 품목별 보조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선진국은 1995~20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5%, 개도국은 1995~2000년 또는 1995~2004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를 한도로 설정하였다.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기준기간 동안 통보된 블루박스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되, 품목특정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할 경우는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어용보조(Green box)²⁵⁾

현행 허용보조 규정보다 개도국의 신축성을 일부 확대하는 한편, 직접지불과 관련된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농촌개발 관련 지원도 허용보조로 인정하며, 자연재해 구호지원 관련 요건을 완화하였다. 직접지불제와 관련해서는 수혜자격 설정 기준년도를 고정기간에서 고정불변기간으로 강화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준기간 변경을 인정하였다.

표 10 허용보조(Green Box) 보조실적

단위: 억 원

구분	세부항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정부 서비스	일반 서비스	조사연구사업	3,193	3,545	3,512	3,355	3,153	2,762	3,034	3,454	3,715	2,787
		검역방제사업	292	371	435	550	656	982	1,343	1,710	1,460	1,193
		교육훈련사업	361	431	473	314	336	344	508	450	474	491
		지도자문사업	398	702	712	685	587	650	696	648	673	595
		검사	503	621	713	654	886	941	1,040	1,092	1,117	1,160
		시장정보및관측지원	48	198	89	141	135	242	270	247	268	171
		하부구조사업	19,068	26,840	31,665	28,779	29,694	25,925	26,793	24,503	25,031	21,142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	860	1,087	843	1,267	1,289	1,102	1,146	1,845	1,829	1,620	
	국내식량구호	67	54	74	67	67	95	122	127	130	147	
	합 계	24,790	33,849	38,546	35,812	36,803	33,043	34,952	34,076	34,697	29,306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비연계소득보조	2,337	2,465	2,433	1,916	1,620	3,946	6,579	7,664	8,088	9,896	
	자연재해구호지원	469	331	663	638	1,190	1,032	1,817	10,669	6,124	2,011	
	구조조정투자지원	11,187	13,631	14,346	13,263	11,992	10,414	11,465	6,410	6,686	5,966	
	환경보전지원	771	871	1,394	1,306	2,350	1,295	1,092	1,147	1,036	853	
	기 타	348	682	580	672	606	811	779	388	257	336	
	합 계	15,112	17,980	19,416	17,795	17,758	17,498	21,732	26,278	22,191	19,062	
개도국 우대보조	투자지원	33	48	76	120	105	78	37	59	51	26	
	자재지원	171	261	302	295	516	428	6,256	516	543	516	
	합 계	204	309	378	415	621	506	6,293	575	594	542	
허용보조 전체 합계		40,106	52,138	58,340	54,022	55,182	51,047	62,977	60,929	57,482	48,910	

25) 허용보조는 생산이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보조로 감축의무가 없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일반서비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자연재해 구호지원 등을 들 수 있다.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기준기간 통보된 블루박스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되, 품목특정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할 경우는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직접지불제와 관련해서 수혜자격 설정 기준년도를 고정기간에서 고정불변기간으로 강화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준기간 변경을 인정하였다.

2. DDA 양우 전망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DDA 협상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와 내년의 EU 집행부 및 WTO 사무총장 교체, 인도 총선 등의 주요국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향후 1~2년 이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7월 25일 마련됐던 잠정 합의안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양허관세를 초과해서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의 발동 요건은 수입물량의 증가분이 기준물량(과거 3년 평균)보다 40% 이상일 때였다. 그러나 인도측은 수입물량 증가분이 4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선진 7개국(G7)은 개도국의 분야별 자유화협상에 참여하여 미국의 면화 보조금 삭감, 공산품 분야에서 WTO 최근 가입국 대우를 비롯한 9개 기타 쟁점을 놓고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아쉽게 결렬되었다.

이처럼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DDA 협상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와 내년의 EU 집행부 및 WTO 사무총장 교체, 인도 총선 등의 주요국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향후 1~2년 이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의 개도국 지위 확보가 보장된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개도국 지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며, 이번 협상에서 확보한 농산물 민감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농림부 보도 자료(www.maf.go.kr)

농림부,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70선, 2008. 6

농림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WTO,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3, 10 July 2008